

[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단위 관련 공익위원 권고문]

-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 제5조제3항(‘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’)의 대상을 구별해 최저임금 관련 별도의 단위를 정하는 것은 현재의 조건에서 어렵다고 판단하고, 노동계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구체적 유형, 특성, 규모 등에 관련된 실태 및 최저임금 적용 방법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 추후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.
-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공익위원의 권고에 기반해 자료를 준비하여 발표하였고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. 노동계가 준비한 자료에서 우리 위원회는 ‘최저임금법 제5조제3항’ 관련 사례와 상황에 대해 이해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었고, 논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.
- 지난 회의에서의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, 도급제 등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, 임금결정 기준 등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조사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
- 이제 관련 논의의 본격적 진전을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가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제3항의 적용과 관련된 대상, 규모,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.
-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플랫폼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, 국회,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의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합니다.